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16
----------	-----

2019년 4월 2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29일, 성흠제, 홍성룡 의원 (찬성자 17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 가. 제안이유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함 (안 제34조제1항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서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이하 “다자녀 가구”라 함)”에 대해 현행 하수도사용료 20% 감면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3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4조)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 8. (생략)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u>100분의 20</u> 에 대하여 감면 10. (생략)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_____ _____ <u>100분의 30</u> _____ 10. (현행과 같음)
<부칙 신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2016년도 제270회 임시회 중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09-01321) 심사 과정에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줄이고,
-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

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하수도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현 요율대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감면요율이 낮다보니 2018년 기준 다자녀가구 수의 약 20% 정도만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하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출산율 제고 유인책 역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2] 최근 2년간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내역

연 도	다자녀 가구수*	감면신청 가구수	감면신청율(%)	감 면 액 (천원)
2017	78,413	14,813	18.9	275,160
2018	92,852	18,319	19.7	443,874

* 상기 다자녀 가구수는 2017년 국가통계포털 데이터와 2018년 행안부 주민등록전산망자료임.

■ 출산율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2016년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들 평균 1.68명 대비 0.51명이 낮은 것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국임.
-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 이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에는 19조 7,000억원,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에는 60조 5,000억원을 기투자하였고, 2015~2020년까지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108조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¹⁾임.

1) 김경수 외 3인, 2018,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 서울시의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총 출생아수는 65,300 명으로 2016년(75,536명) 대비 10,236명(13.5%)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6년 0.94명 보다 0.1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국 최저 수준임.
- 서울시는 “2018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가족담당관-4933, 2018.3.9.)하고 주거·일자리·친화적 환경조성(결혼·임신·출산)·자녀 양육(보육)·생활균형 등 5개 분야 73개 사업(101개 세부사업)을 추진(붙임 참조)하였는데, 현행 조례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자녀 양육분야 다자녀가구 지원에 해당함(〔붙임〕 참조).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율 상향(20%→30%)에 대한 의견

- 서울시의 다자녀가구 감면대상 세대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총 422만 82세대 중 감면대상인 다자녀가구는 총 92,852가구로 총 가구수 대비 6.88%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수로는 서울시 전체 인구(10,124,579명)의 약 4.67%인 473,125명임²⁾.

[표 3] 서울특별시 다자녀가구 현황

구분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수(자녀수별)								다자녀가구 합계(B)	비율 (%, B/A)
	세대 총수(A)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6자녀	7자녀		
서울특별시	1,349,241	729,675	526,714	85,264	6,616	745	149	78	92,852	6.88

- 한편, 다자녀가구의 연간 하수배출량을 추계해보면 2018년 기준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배출량이 약 77억 14백만 m³(톤)인 점을 감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2018.1.31. 기준

안할 때 단순계산으로 인구 1명당 연간 가정용 하수도 배출량은 약 $70.52m^3$ (톤)이 되고, 따라서 다자녀가구의 연간 가정용 하수 배출량은 약 3,300만 m^3 (톤)으로 추계할 수 있음.

[표 4] 서울특별시 다자녀가구 연간 하수도사용료 현황

(단위 : m^3 , 원)

구분	2019년 현재 하수도사용료 기준			
	대상 가구수	가구 월평균 배출량	가구 월평균 사용료	연간 하수도사용료 총액
3자녀	85,264	29.3	11,720	11,991,528,960
4자녀	6,616	35.2	16,830	1,336,167,360
5자녀	745	41.1	22,320	199,540,800
6자녀	149	47.0	27,810	49,724,280
7자녀 이상	78	52.8	34,570	32,357,520
합계	92,852	205.4	113,250	13,609,318,920

- 만일 본 개정안과 같이 다자녀가구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였을 경우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3자녀 가구 기준으로 연간 감면액은 1가구당 42,19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행 20% 감면(연간 28,120원) 대비 가구당 연간 약 14,070원의 추가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표 5] 서울특별시 다자녀가구 자녀수별 하수도사용료 감면 예상액 현황
(단위 : m³, 원)

구분	감면대상 다자녀가구		가구당 연간 하수도사용료 감면 예상액	
	가구 연 평균 배출량	가구 연 평균 사용료	현행 20% 감면 시	30% 감면 시
3자녀	351.6	140,640	28,120	42,190
4자녀	422.4	201,960	40,390	60,580
5자녀	493.2	267,840	53,560	80,350
6자녀	564.0	333,720	66,740	100,110
7자녀 이상	633.6	414,840	82,960	124,450

- ※ 1. 배출량 중 1m³ 미만의 수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로 계산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2. 사용료 계산 후 십 원 미만은 절사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4항 근거)
- 3. 가구 연 평균 사용료는 20%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총 사용료임.

- 반면에, 세수 감소액은 다자녀가구 총 92,852가구 중 2018년 기준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한 약 20%인 18,319가구가 본 조례 시행연도인 2020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연간 세수 감소액이 약 4억 44백만원에서 약 6억 66백만원으로 연간 약 2억 2천만원 정도의 순증이 예상됨([표 6] 참조).
- 만일, 다자녀가구 모두(100%)가 감면신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세수감소액이 2018년 기준 추계치인 약 27억 22백만원(=총 다자녀가구수 × 20%감면액)에서 2020년 추계치 약 40억 83백만원(=총 다자녀가구수 × 20%감면액)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6]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변동에 따른 감면금액 추이(2018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 비율	
	20% 신청 시	100% 신청 시
20% 감면 (현행)	443,874	2,721,864
30% 감면 (개정안)	665,811	4,082,796

-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다자녀가구 모두(100%)가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연간 세수감소액 약 40억 83백만원 정도는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의견임.

■ 맺음말

-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20% 감면규정은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 감면신청자가 20% 수준에 불과 하는 등 소액 감면으로 인하여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감면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과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번 회기에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수도요금을 다자녀가구에 대해 30% 감면(현행은 감면규정 없음)하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시 발의(성흠제·홍성룡 의원 공동발의)된 상태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와 함께 수도요금 감면이 시행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안의 감면율 상향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지금의 감면신청율 저조현상은 홍보 부족도 원인 중 하나라 사료되는바,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붙임] 2018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주요 추진사업

[붙임] 2018년 서울시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주요 추진사업

1. 주거 분야

사업목록 (5개 사업, 5개 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업명	2018 목표	사업구분
1. 주거지원 (5개)	1-1 주거지원	1-1-1	○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폭 확대 (기존사업 대폭확대)	15,741호	국·시비
		1-1-2	○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6세대	sh공사
		1-1-3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100%	시비
		1-1-4	○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신규)	제도개선	비예산
		1-1-5	○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 정보 안내 (신규)	교육 5회	시비

2. 일자리 분야

사업목록 (6개 사업, 6개 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업명	2018 목표	사업구분
2. 일자리지원 (6개)	2-1 일자리지원	2-1-1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4,000명	시비
		2-1-2	○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	4,655명	시비
		2-1-3	○ 청년창업 지원	400명	출연금
		2-1-4	○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신규)	100개기업	시비
		2-1-5	○ 여성 적합·특화 일자리 발굴 활성화 (신규)	50명	시비
		2-1-6	○ 한부모 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신규)	100명	시비

3. (결혼·임신·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사업목록 (21개사업 26개 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업명	2018 목표	사업구분
3. (결혼·임신·출산)친화적 환경 조성(26개)	3-1 결혼친화적 환경조성	3-1-1	○ 시민청 결혼식 운영 및 확산	35쌍	시비
		3-1-2	○ 결혼 예비 부부 교육지원	650쌍	시비
		3-1-3	○ 작은결혼식 추진 확산	39개소	비예산
	3-2 임신·출산 친화적환경 조성	3-2-1	○ 난임부부 지원 확대	4,752건	국·시·구비
		3-2-2	○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95,400명	국·시·구비
			-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3,000명	국·시·구비
		3-2-3	○ 영유아 건강관리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700명	국·시·구비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환아관리	66,000명	국·시·구비
			- 난청 조기진단사업	10,000명	국·시·구비
			- 영유아 건강검진	3,600명	국·시·구비
		3-2-4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002명	국·시·구비
		3-2-5	○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4개구	시비
		3-2-6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접종률 95%	국·시·구비
		3-2-7	○ 모든 출산 가정에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대폭확대) (기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0,000명	국·시·구비
		3-2-8	○ 출산장려금 지원	42,276명	구비
		3-2-9	○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규)	37,750명	시비
		3-2-10	○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사업(신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	1,000명	시비
		3-2-11	○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신규)	100명	시비
		3-2-12	○ 산모·영유아 대상 방문 간호서비스 지원 확대 (대폭확대) (기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36,000건	시비
		3-2-13	○ 부모교육 사업 - 세살마을 부모교육	2,190명	후원금
			- 가족학교 운영지원	25개	시비
3-2-14	○ 어린이집 교사 인식개선교육	8,800명	국·시·구비		
3-2-15	○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4개	국·시·비		
3-2-16	○ 일가족양립 인식개선 캠페인	1,200건	출연금		
3-2-17	○ 장난감 나눔축제	2,900명	시비		
3-2-18	○ 지하철 육아 편의시설 설치(서울메트로,도시철도)	13개역	시비		

4. 자녀 양육(보육) 분야

□ 사업목록 (35개사업 52개 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업명	2018년 목표	재원
4. 자녀양육 부담경감 (52개)	4-1 자녀 양육· 보육지원	4-1-1	○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230천명	국·시·구비
		4-1-2	○ 재가 영유아 양육 강화 - 가정양육수당 지원	120천명	국·시·구비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대폭 확대)	730천건	국·시·구비
			-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방 나눔터 운영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16개구 53개	국·시·구비 시비
		4-1-3	○ 아동수당 지원(신규)	37,750명	국·시·구비
	4-1-4	○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신규)	55%	시비	
	4-2 자녀 교육 부담 경감	4-2-1	○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1,942명	시비
		4-2-2	○ 방과후 교육지원 -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435개소 (22개소)	국시비 (시비)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 자기주도 학습관 운영	21개소 1개소	국시비 시비
	4-2-3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18천명	시비	
	4-3 다자녀 가구 지원	4-3-1	○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50,000매	시비
		4-3-2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률 60%	비예산
	4-4 보육인프라 구축	4-4-1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50개소	시·구비
		4-4-2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놀이터 혁신 프로젝트 포함 확대)	263개소	국·시·구비
		4-4-3	○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 포함)	100% (25개소)	국·시·구비
		4-4-4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00천명	국·시·구비
		4-4-5	○ 우리동네보육반장 지원	140명	시비
		4-4-6	○ 서울상상나라 운영	53만명	시비
		4-4-7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4개소	시·구비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2,250개소	국·시·구비
			- 장애아통합교육시설 운영 활성화	25개소	시·구비
			- 다문화통합보육시설 지정·운영	55개소	시·구비
	4-4-8	○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 운영(신규)	25개소	시비	
	4-4-9	○ 온마을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신규)	실태조사	시비	
	4-4-10	○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운영(신규)	23개소	시비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 업 명	2018년 목표	재원
4. 자녀양육 부담경감 (52개)	4-5 안심보육환 경조성	4-5-1	○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이용 확대 -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 가입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84% 245,300명 3,600개소 3,000개소	비예산 시비 국·시·구 시비
		4-5-2	○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설치(신규)	6,100개소	시·구비
		4-5-3	○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 확대(신규)	478명	시비
	4-6 아동·청소년보 호육성	4-6-1	○ 위기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학대예방 보호체계 강화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 인터넷중독 예방치료센터 운영확대	10개소 5,500명 23천명 810천명	국·시비 국·시비 국·시비 시비
		4-6-2	○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4,050명 424개소	국·시비 국·시비
		4-6-3	○ 학교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운영	14개소 1개소 1개소	시비 시비 시비
	4-7 아동·청소년 체험기회 확대	4-7-1	○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1개소	시비
	4-8 아동·청소년 정책추진기반 조성	4-8-1	○ 중장기 아동복지 시행계획 수립	100%	비예산
	4-9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4-9-1	○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강화	159,260명	국·시비
		4-9-2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인식개선	17,850명	시비
		4-9-3	○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	150명	시비
		4-9-4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1,610명	시비
		4-9-5	○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22,260명	국·시비
		4-9-6	○ 학령기 중도입국 자녀 교육시설 확충(신규)	250명	시비
		4-9-7	○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신규)	18명	시비
4-9-8		○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신규)	56명	시비	

5. 일·가족(생활)균형 분야

□ 사업목록 (6개사업 12개 세부사업)

분야별	영역	관리번호	사업명	2018년 목표	재원
5. 일·가족(생활) 균형 지원 (6개)	5-1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	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제도 강화 - 육아공무원 「9 to 5 근무제」 실시 -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출산공무원 성과상여금 우대정책 실시 -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 직장내 「가정의 날」 지정 확대·운영 -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183명 82명 가점 5점 45명 현원의 32% 50회 104명	비예산 시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시비
		5-1-2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상담 5,140건	시비
		5-1-3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200개 기관	시비
		5-1-4	○ 서울시 일·가족 양립지원센터 운영	1개소 운영	출연금
		5-1-5	○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17개	시비
	5-2 여성 경력단절 예방	5-2-1	○ 여성일자리 창출	45,000명	국·시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6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성흠제, 홍성룡 의원 (2명)

찬 성 자 : 김희걸, 김기대, 김평남,
문장길, 강동길, 이현찬,
박순규, 이경선, 이병도,
이영실, 권영희, 이정인,
최 선, 최기찬, 송명화,
김제리, 김정환 의원 (17명)

1. 제안이유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함 (안 제34조제1항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p> <p>1. ~ 8. (생략)</p> <p>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이 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u>100분의 20</u>에 대하여 감면</p> <p>10. (생략)</p>	<p>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 ---<u>100분의 30</u>-----</p> <p>10.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이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조(감면)에서 다자녀 가구의 면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하면서 세입 감소 요인이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중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한 가구

나. 전제

- 가구의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신청비율 증가는 2017년도와 2018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추정함
- 그밖에 사업규모 확대, 인건비 인상, 물가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라. 방법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은 5년간 40억 84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8억 17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하수도료 감면	△544,563	△680,704	△816,845	△952,986	△1,089,127	△4,084,225
	소계(a)	△544,563	△680,704	△816,845	△952,986	△1,089,127	△4,084,225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544,563	680,704	816,845	952,986	1,089,127	4,084,225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 당 관

사업평가팀장

예산분석관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여차민

한기백

☎ 02-2180-7952

e-mail : hophan@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분(안 제34조)

2. 세부추계내역

가. 감면대상 가구 전체 연간 하수도사용료 계산

구분	2019년 현재 하수도사용료 기준			
	대상 가구수	가구 월평균 배출량	가구 월평균 사용료	연간 하수도사용료 총액
3자녀	85,264	29.3m ³	11,720원	11,991,528,960원
4자녀	6,616	35.2m ³	16,830원	1,336,167,360원
5자녀	745	41.1m ³	22,320원	199,540,800원
6자녀	149	47.0m ³	27,810원	49,724,280원
7자녀 이상	78	52.8m ³	34,570원	32,357,520원
합계	92,852			13,609,318,920원

주 : 연간 총액은 대상 가구수 × 가구 월평균 사용료 × 12개월임
 자료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상·하수도사용료 비교표

('19년 3월 현재)

구분	상수도 기본요금		상수도 사용요금		하수도사용료(기본요금 없음)							
	구경 (mm)	요금 (원)	사용구분 (m ³)	단가 (원/m ³)	사용구분 (m ³)	'11	'12	'13	'14	'17	'18	'19
가정용	15	1,080	30까지	360	30까지	160	220	260	300	330	360	400
	20	3,000	31~50	550	31~50	380	510	610	700	770	850	930
	25	5,200										
	32	9,400	51이상	790	51이상	580	780	930	1,070	1,180	1,290	1,420

○ 자녀수별 가구당 하수도사용료 감면 예상액 계산

구분	감면대상 다자녀가구		가구당 연간 하수도사용료 감면 예상액	
	가구 월 평균 배출량	가구 월 평균 사용료	현행(20%) 감면 시	30% 감면 시
3자녀	29.3m ³	11,720원	28,120원	42,190원
4자녀	35.2m ³	16,830원	40,390원	60,580원
5자녀	41.1m ³	22,320원	53,560원	80,350원
6자녀	47.0m ³	27,810원	66,740원	100,110원
7자녀 이상	52.8m ³	34,570원	82,960원	124,450원

※ 비고 1. 월 배출량 중 1m³ 미만의 수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로 계산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2. 월 사용료 계산 후 십 원 미만은 절사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4항 근거)

○ 감면비율별 현실적인 하수도사용료수익 감소 예상액 추산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5년 합계
대상가구 중 신청비율			40% 신청	50% 신청	60% 신청	70% 신청	80% 신청	-
하수도사용료 감면률	30% 감면		1,633,028	2,041,285	2,449,542	2,857,799	3,266,056	12,247,710
	현행(20%)		1,088,465	1,360,581	1,632,697	1,904,813	2,176,929	8,163,485
	확장분		544,563	680,704	816,845	952,986	1,089,127	4,084,225

※ 감면대상가구 중 신청비율은 감면비율 확대 및 홍보 강화에 따라 1차~5차년도 매년 전년보다 10%p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18년 감면신청가구비율 약 20%, '19년 30%, '20년 40%, '21년 50%, '22년 60%, '23년 70%, '24년 80% 예상 시)

○ 다자녀 감면가구 및 감면액 통계(2017.1.1. 시행)

(단위: 천 원)

연도	근거 조항	감면대상(사유)	최초 감면시작일 (시행일 기준)	종료일	감면대상 (수용가) 수	감면액 (연간)
2017년도	제1항 제9호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2017.1.1. ('17.1월 사용분부터)	적용 중	14,813 (가구수)	275,160
2018년도	제1항 제9호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2017.1.1. ('17.1월 사용분부터)	적용 중	18,319 (가구수)	443,874